Yeosu
Web Contents

2024년 04월 28일 08시 47분

목차

목차 2
등록현황 3
토지분할 제한 면적 3

토지분할 제한 면적

2014.04.17 조회수 820 등록자 박종열

관리번호	전라남도 여수시-2008-0023
담당부서	도시계획과
상위법령	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조례	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26조
유형	3호 - 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
등록사유	국토도시개발
법령공표일	기존규제
존속기한	2001-10-13
규제시행/폐지일	2001-10-13
규제내용	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.관리지역.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·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녹지지역 : 200제곱미터 이상 2. 관리지역 : 60제곱미터 이상 3. 농림지역 : 60제곱미터 이상 4. 자연환경 보전지역 : 60제곱미터 이상

목록

이전글 전라남도 여수시-2008-0022

다음글 전라남도 여수시-2008-0024

COPYRIGHT © YEOSU-CITY. ALL RIGHTS RESERVED.

Yeosu
Web Contents

여수시